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42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4248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3036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가희, 이승형

피고,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변론 종결2020. 1. 14.

판결 선고2020. 2. 6.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303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930,24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잇는 선으로 분할한 (가)부분 330,578m²(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잇는 선으로 분할한 (가)부분 302,500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확장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F, G, H, I, J, K,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24. 접수 제15154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2/6, G, H, I가 각 1/6, J, K, L이 각 1/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D1)은 2017. 6. 20. 위 각 지분권자들(이하 위 각 지분권자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원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은 2017. 12. 26. 원고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2. 28.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 앞부분에는 E만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끝부분에는 원고와 E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E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매도인 D(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약정의 목적)

'갑'은 토지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을'은 '갑'이 신규 사업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의 해결 및 토지 사용 후 '갑'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전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C
지목	임야
면적	930,248m ² (281,400.02평)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유자	F 외 6인

제3조(확인사실)

'갑'은 위 제2조 표시 부동산(930,248m²)에 대하여 2017. 6. 20. 소유자 F 외 6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원 계약서'라 함은 매도인이 위 제2조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7. 6. 20. F 외 6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말한다.

제5조(매매 부동산의 표시)

- 매매할 부동산의 면적은 위 제2조의 부동산 중 약 100,000평2) 으로 한다.
- 매매할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지적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00%	₩1,000,000,000 (금십억원정)		
계약금	20%	₩200,000,000	계약체결 시	
중도금		없음		

매매대금	100%	₩1,000,000,000 (금십억원정)		
잔금	80%	₩800,000,000	2018. 6. 30.	

3. 원 계약서 상 잔금일은 2018. 12. 31.이지만 '갑'은 잔금을 2018. 6. 30.까지 조기 정리할 예정인바, 2018. 6. 30. 잔금일에서 다소 단축 또는 연장이 있는 경우 본건 잔금일도 이에 맞추기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갑)(비영리민간단체) D

공동매수인 1(을) E

공동매수인 2(을) 원고

다. D은 2018. 6. 28. E과 원고를 공동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8. 6. 30.까지 잔금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18. 7. 2. 역시 E과 원고를 공동 수신자로 하여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자 M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이거나, 채무인수 등의 법률행위 또는 이른바 설립 중 회사의 법리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한테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D은 이 사건 원소유자들과 이 사건 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만 피고 명의로 한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D은 이 사건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는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D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는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D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D과 동일한 주체이거나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및 향기메일 발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2. 6.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X, Y에 두고 설립된 반면,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 및 임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0. 24. 본점을 충남 홍성군 Z에 두고 설립되었는바, D과 피고는 그 법인형태, 설립일자 및 목적, 주된 사무소의 위치 등이 전혀 다른 점, ② 당심 증인 S은, D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변 12필지에서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에는

농지도 포함되어 있어 D을 개발주체로 하기 어려워지자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인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원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고 피고의 설립경위와 피고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D이 이 사건 원계약을 체결한 2017. 6. 20. 이후에 피고가 설립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D은 별개의 법인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1)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갑 제6, 10, 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인수 등 법률행위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인수하려는 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민법 제453조 제1항)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민법 제454조 제1항) 채무를 인수하려는 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계약인수도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S이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을 들며 피고가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이 2018. 7. 17. 원고의 지배인 T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6호증)에 "매수자 명의3)는 D을 농업회사법인 B(주)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업부지 전체를 농업회사법인 B(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E 및 A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0,000여 평에 대해 경계 측량 및 분할 등기 절차를 수행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회사법인 B(주)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은 당심에서 '위 이메일을 보낼 당시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은 알고 있었으나, 중개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D이나 피고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S이 위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S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또한 원고는 U4) 이 D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8억 원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추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이 지정한 주식회사 V5) 앞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D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8. 7. 17.자로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만 평을 E에게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잔금 8억 원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증하기 위해 D 소유 토지에 주식회사 V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0호증)을 작성하여 U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8. 7. 23. 피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AA, AB, AC 토지에 2018. 7.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V,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O은 D이 U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0만 평의 분필절차가 완료되면 E에게 위 10만 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수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작성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근저당권이 피고가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려는 취지로 설정한 것인지, 위 영수증상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D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가 제3자로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립 중 회사의 법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설립 중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화상의 개념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7. 10. 24.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립 중 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이거나,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 D과 원고, E이 2017. 12. 26.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끝부분에 원고와 E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그 도장을 모두 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은 E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최고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때 모두 원고를 공동수신자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공동매수인이라 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원고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되는 관계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E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이미 본 바와 같이 D이 2018. 6. 28. 잔금지급기일인 2018. 6. 30.까지 잔금 8억 원의 지급을 촉구한 후 원고와 A이 이를 어기자 2018. 7.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

1) 원고는 D, 이 사건 원소유자들,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인 D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대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D과 이 사건 원소유자들이 이 사건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대내적으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당심 증인 S의 증언 외에 갑 제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에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토지 중에 농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인 피고를 설립한 후, 2018. 6. 18. 이 사건 원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개의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D이 이 사건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제외한 종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정정미

판사성하경

별지

- 1) 원래 비법인사단이었던 D은 2017. 2. 6. 사단법인 W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에서는 모든 법률행위를 D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이하 그 명칭은 D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의미하는데, 첨부된 별지도면에는 330,578.0m²라고 그 면적이 병기되어 있다.
- 3) 이 사건 원계약의 매수자 명의를 의미한다.
- 4) U은 2018. 7. 17. E과 E 법인 전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을 제14호증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참조).
- 5) U이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